

의안번호	제 510 호
의 결 연 월 일	2016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6년 11월 22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510
--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6년 11월 22일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사유

- 행정재산(충북스포츠훈련관) 용도폐지에 따른 조례 정비
- 상위법령(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)에 맞게 불합리한 조항 정비

2. 주요내용

- 충북스포츠훈련관의 명칭, 기능 조항 삭제 (안 제2조, 제3조)
- 수탁자와 행정재산 위탁운영 갱신시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갱신해야 하는 조항 삽입 (안 제4조)

3. 의안전문 : 불 임

4. 신 · 구조문 대비표 : 불 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불 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.

제3조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충청북도체육회 등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”을 “충청북도체육회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수탁자”를 “운영을 위탁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”로, “연장”을 “갱신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탁자와 위탁운영을 갱신할 경우에는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에 갱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명칭 및 위치) 충청북도 체육시설(이하 “체육시설”이라 한다)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충북스포츠훈련관</u> :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1013-19</p>	<p>제2조(명칭 및 위치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
<p>제3조(기능) 체육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동·하계스포츠 종목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지훈련 및 합숙 훈련장으로 제공</u>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(생략)</p>	<p>제3조(기능) -----</p> <p>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관리 및 위탁운영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<u>충청북도체육회 등</u>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</p>	<p>제4조(관리 및 위탁운영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충청북도체육회 등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는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-----</p> <p>- 운영을 위탁받은 자(이하 “수 탁자”라 한다)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갱 신-----</p> <p><u>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탁 자와 위탁운영을 갱신할 경우에 는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에 갱신하여야 한다.</u></p>
<u>③ (생 략)</u>	<u>④ (현행과 같음)</u>

관계법령 발췌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“관리위탁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)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.

1.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
2.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(이하 “관리수탁자”라 한다)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 3.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
 4.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·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·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1호

○ 사 유

- 금번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(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)에 맞게 불합리한 조례 조항을 개선하고,
- 체육시설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에 따라 시설의 명칭, 기능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별도의 비용수반 사항은 없음

○ 작성자

-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장 안남규